

大陸棚의 國際法上的地位

金 演 昇

1. 概 要

國際法學에서 領海를 넘어 公海의 海底에 對한 沿岸國의 權利에 關한 言及은 이미 1916年 「스페인」의 「부엔(Buen)」에 依하여 漁業에 關해서 問題된 以來 때때로 海底權利에 對한 權利主張이 있었으나 實質的인 關心이 생기게 된 것은 1945年 美大統領 「트루만」의 宣言이라 하겠다.

그 宣言에서 「트루만」은 「美國은 天然資源을 保存하고 또 愼重히 이를 利用함에 큰 必要性을 느끼게 되어 公海下에 있지만 美合衆國 沿岸에 接한 大陸棚의 地下 및 海床의 天然資源을 管轄하고 統制한다. 大陸棚이 他國의 沿岸까지 延長되었거나 또한 隣接國과 共通인 境遇에 그 境界는 合衆國과 當該國間의 衡平한 原則에 따라 決定될 것이다. 大陸棚의 上部水域의 公海로서의 性格과 自由롭고 防禦받지 않는 航行의 權利는 本 宣言으로서 何等의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하므로서 世界各國의 大陸棚에 對한 關心은 자못 컸던 것이다. 그 후 世界各國은 大陸棚에 關한 對外宣言과 國內立法을 發表하므로서 自國의 大陸棚資源을 獨占하고 排他的인 權利를 갖도록 措置를 取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斯界의 科學技術의 發展으로 大陸棚의 鑛物資源 特別히 石油産業 開發에 迫車를 加하였던 것은 事實이다. 이같이 世界各國의 大陸棚에 對한 關心과 各自의 區區한 權利主張은 自然히 國際會議 特別히 海洋法會議의 論議의 對象이 되었으며 及其也 1958年 國際聯合 「제네바」 海洋會議에서 「大陸棚에 關한 協約」의 成立을 보게 되었다. 大陸棚에 關한 協約을 說明하기에 앞서 大陸棚의 始發點 및 外緣을 잘 理解하기 爲해서 領海와 公海에 對한 說明이 必要하다고 본다.

2. 領海와 公海

바다는 國際法上으로 領海와 公海로 二分된다는 것은 基本的인 概念이다. 18世紀 以來로 陸地 周邊에 있는 一定한 넓이의 바다는 沿岸國 管轄에 屬하며 또한 獨點의인 支配下에 있어 陸地의 領土와 다름없다는 것이 國際法上 確立된 思想이며 領海 以外의 海洋은 公海로서 이느 나라의 統制도 받지 않는 部分이다. 여기서 領海와 公海에 對한 限界의 問題가 惹起된다. 各國이 自己 나름대로 3浬, 6浬, 12浬 또는 200浬를 主張하게 되면 複雜한 問題가 生길 것은 當然하므로 이것을 國際法上으로 統一시키려는 것이 또한 國際海洋會議의 目的이기도 하다. 이같은 主張의 理由는 무엇인가? 日本, 英國, 美國 등은 海岸으로부터 3浬線을 主張하고 소련, 亞細亞, 아프리카 等地의 나라들은 12浬를 主張하는가 하면 「라틴아메리카」(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는 200浬를 主張한다. 이 相異한 主張의 理由를 大分하면 다음 셋으로 볼 수 있다.

첫째, 先進國의 商船의 航行에 있어서는 後進國의 領海가 좁고 反面에 公海가 넓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國防上 世界的 戰略體制를 構想함에 있어서 弱小國의 領海가 좁고 公海가 넓어야 艦隊의 通行이 自由롭고, 戰略上 必要하다고 생각하며, 反面 弱小國은 領海가 넓어야 國防上 安全하다는 思考方式에서 비롯한다. 그보다 더 重要한 것은 셋째로서 漁業에 關한 關心이다. 日本이나 英國, 美國 등은 漁撈技術이 發達되었기 때문에 後進國의 沿岸까지 浸透하여 漁撈作業을 하고자 하지만 後進國은 反對로 自己 領海를 넓혀서 漁業資源을 獨占確保하려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日本같은 世界屈指의 水産國이며

〈千字進言〉

祖國은 後進性에서 脫皮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祖國近代化가 科學技術人의 參與없이 成就될 수 있을까?

그런데 果然 祖國은 얼마나 近代化하고 있는가?

到處에 高層建物이 聳立했대서 近代化냐, 洪水처럼 自動車가 거리에 넘쳐 누빈대서 近代化냐?

世界最大의 호텔火災를 記錄한것이나 外國의 거의十倍에 가까운 交通事故率이

祖國近代化의 產物이랄수는 없다.

團東이나 處罰따위로 事故 防止를 하려는 思考는 死後藥方文格에 不過하다.

災害發生의 與件을 事前에 면밀하게 研究檢討하여 未然防止策을 강구하는 것이 賢明한 方法이며 最上策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한 最上策은 科學에 根據를 두어야하며 科學技術人의 힘을 모아 그 責任을 다할때 비로서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도 둘째도 祖國近代化는 科學技術人의 有機的이고도 積極的인 參與 없이는 期待할수없다.

그런데 果然 科學技術人이 그所任을 다할수있는 環境과 社會의 風土가 造成되어 있는가?

疑心스럽다.

技術을 賤視하고 技能을 높이 評價하는데 인색한 社會風潮는 예나 크게 다를 바없다.

보라!

얼마나 많은 各種團體의 會館이 現代的 建築物로 登場했는가?

그런데 科學技術人이 더불어 呼吸하고 活動하고 서로 資料를 交換하며 激勵할 수 있는 會館建立은 아직 遙遠한 것이다.

漁業先進國이 最近까지도 領海 3浬를 主張한 것도 이런 理由에 基因한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1958年 第一次 海洋會議에서 3浬는 漸次 弱화되고 大部分의 國家가 12浬를 主張함으로써 그 案이 提出되었으나 3分2贊成 未達로 成立되지 못했고 그 後 1960年 第二次 海洋會議에서도 12浬로 領海境界線을 統一하려는 끈질긴 努力이 繼續되었다. 그리하여 法的意味의 大陸棚은 領海의 限界線 밖에 있는 公海의 海底로 부터 始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大陸棚의 外緣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되는데 이것은 他 項에서 說明키로 한다.

3. 大陸棚에 關한 協約

1958年 「제네바」에서 열린 第1次 海洋會議에서 「大陸棚에 關한 協約」(以下 “大陸棚協約”이라고 한다)의 成立을 보게 된 經緯는 Ⅲ-1項에서 說明한 바와 같다.

本 協約은 大陸棚에 對한 國際法上의 基本協約이며 現在 美·蘇·英·佛·오스트라리아 등 42個國이 參加하고 있다. 西獨·놀웨이·이태리·카나다 등의 많은 나라가 非加入國이지만 그들 역시 大陸棚에 關한 對外宣言 또는 國內立法措置를 取하고 있으며 우리도 1952年 1月18日 李承晚大統領의 隣接海岸에 對한 主權宣言을 行한 以來 1970年 1月1日로 海底鑛物資源開發法을 公布, 實施함으로써 一部國內 立法措置를 끝냈다. 우리나라나 또 한 아무런 國內立法措置도 없는 日本과 같은 非加入國이라도 慣習國際法上 大陸棚制度가 確立된 것으로 보아 大陸棚協約을 떠나서라도 이것이 確認됨은 勿論이다. 그것은 大陸棚協約도 大體로 慣習國際法을 成文化한 것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이에 關하여 注目할 만한 것은 1969年의 北海 大陸棚 事件에 關한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內容이다. 이 事件은 西獨과 荷蘭·덴마크 間의 大陸棚境界 劃定에 關한 裁判이었다. 西獨이 大陸棚協約의 加入國이 아니었기 때문에 判決은 慣習 國際法에 準處하여 判斷되었고 이 判決에서 裁判所는 大陸棚의 境界劃定뿐 아니라 大陸棚制度 一般에 關하여 慣習國際法에 對한 重要한 指針과 見解를 表明한 것이 되었다. 以下 大陸棚協約의 條項을 參照하면서 大陸棚의 範圍와 深海底 沿岸國의 權利, 大陸棚의 資源 및 境界等에 關하여 그 要點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

始作이 半이란 信念에서 우리 科學技術 人끼리 人間됨을 다해서 昨年에 基礎工事를 始作했지만 아직 發足한지 날이 짧은 科總으로서는 너무 辟차지 않을 수 없어 다시금 各界各層에게 呼託하는 바이다.

政治人도

經濟人도

國民모두가 祖國近代化를 의치고있다.

그러나 이외침은 이는 누구보다도 또 어느곳에서보다도 우리 科學技術人에 依해 科學技術센타에서 크게 메아리 쳐져야 한다.

따라서 온갖 災害에서 人命과 財產을 保護하고 보다 높은 生産과 收益을 올려 向上되고 潤澤한 生活을 渴望한다면 우리 科學技術人에게 會館을 달라!

源 및 境界等에 關하여 그 要點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

4. 大陸棚의 範圍와 深海底

大陸棚을 領海 밖에 있는 海底 區域의 海床(Sea bed) 및 下層土(Sub soil)로서 上部水域의 水深이 200미터까지의 것 또는 그 限界를 넘는 境遇에는 上部 水域의 水深이 海

底區域의 天然資源의 開發을 可能케 하는 곳까지의 것이라 하여 大陸棚協約第1條(a)는 그 範圍를 明示한듯 하나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領海線을 基準으로 한 始發點을 分明히 하여도 그 外緣에 關해서는 模糊한 點이 많아 國際法上 一大 論難이 惹起되고 있음은 事實이다. 첫째 上部水域의 水深이 200미터까지의 곳, 또는 天然資源開發이 可能하다면 그 以上の 水深의 곳이라 하여 地質學上의 大陸棚의 外緣은 場所에 따라 그 水深을 달리하고 있지만 大陸棚協約에서는 그러한 地質學上의 概念을 떠나서 一律으로 水深 200미터를 範圍로 할 뿐 아니라 開發만 可能하다면 그 以上の 水深에도 當該 沿岸國은 大陸棚協約에 依하여 그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는 것이다. 水深 200미터까지는 認定된다 하더라도 그 以上の 水深에 關하여는 一定한 基準이 없는 限 當該國의 科學과 技術의 發展으로 얼마든지 開發區域을 擴大시킬 수 있으므로 沿岸國의 大陸棚의 範圍 역시 漸次 擴大될 수 있다. 大陸棚協約의 採擇 當時만 하여도 200미터 以上の 深海 開發은 不可能한 것이었으나 最近 開發技術의 向上과 經濟發展은 根本的으로 本 規定을 흔들고 있다.

한편 沿岸國은 自己의 技術과 資本은 물론 第三者의 技術 및 資本의 導入으로 大陸棚開發을 할 수 있으며 先進國의 技術援助를 받든지 外國의 大會社로 하여금 開發하게 하는 形式을 取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水深 200미터 以上の 深海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떤 時點에 있어서 最高의 技術과 最大의 資本으로 開發이 可能한 深海底는 各 沿岸國에 依하여 이미 獨占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學者의 말을 빌리면 “……大陸棚協約 第1條의 規定에 依하여 世界의 海底는 이미 各 沿岸國에 依해 남김없이 分割·獨占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大陸棚 外緣의 限界가 規定되지 않는 限 即 그렇게 協約의 規定이 改正되지 않는 限 大陸棚은 科學技術의 進歩에 따라 繼續 擴大되어 結局에는 海洋分割이라는 問題를 惹起시킬 可能性마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緣由로서 國際聯合에서는 大陸棚의 外緣을 어느 限界에서 자르고 그 外部의 深海底는 國際管理에 두자는 意見이 強力히 臺頭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國際的으로도 各國의 意見이 같은 傾向에 있다. 좀 더 詳細히 말한다면 一定한 國際機關을 設定하고 開發을 願하는 者는 그 機關에 使用料를 納付하고 所定의 許可를 받아 開發하도록 하고 支拂된 使用料는 後進國의 開發을 爲하여 使用한다는 奇拔한 提案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思考方式에 依하여 1967年 12月18日 國際聯合總會에서는 「現在의 國家管轄의 限界를 넘어 있는 公海의 海底 및 海床과 그 地下는 純全히 平和의 目的을 爲하여 保留하며 그 資源은 人類를 爲하여 利用한다」는 것을 全 會員一致로 決議하였다. 이것은 繼續 審議되어 1968年 第23次 國際聯合總會는 深海底平和利用委員會를 常設키로 하고 海底의 平和의 利用의 促進을 爲한 國際機關의 設立을 研究하여 次期 總會에 報告할 것을 決議하기에 이르렀다.

그 後 1969年 12月 第24次 國際聯合總會에서는 A.B.C.D의 4個決議案이 採擇되었는데 그 中에서 A는 深海底 範圍의 再檢討 即 公海 大陸棚 領海와 接續水域의 關係, 等を 再檢討하자는 것이며, D는 深海 海底에 關한 國際管理制度가 設置될 때까지 어떠한 나라도 深海底에 對한 資源 開發活動을 할 수 없으며 그

에 대한 權利主張도 認定치 않는다는 것을 宣言한 것이다. 그 후 深海底平和利用委員會의 活動은 極히 活潑한 것이었으나 各國의 利害問題 등으로 統一된 成案을 얻지 못하고 1970年 10月 第25次 總會는 審議를 거듭하여 結局 同年 12月 「國家管轄의 範圍를 넘은 海底 및 그 地下를 規制하는 原則宣言」 所謂 「法原則宣言」을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그 內容을 簡單히 살펴보면 前에 主張하고 論議해 온 理論을 延長한 좀더 全般的이고 具體的인 것에 不遇하다. 即 深海底는 人類共同의 財産이라는 前提下에 그 資源의 探查와 開發은 將來 設立될 國際機關에 依하여 規定된다. 그리고 이 區域의 開發은 平和的인 目的에 限하여 利用됨은 勿論 全人類의 利益을 爲하여 行하여져야 한다는 것 等이다. 그러나 本法源則에 있어서도 深海底區域은 國家管轄權의 範圍를 넘어서 海底區域이라 하여 追後決定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大陸棘의 外緣 即 大陸棚과 深海底의 境界 問題는 그 대로 未解決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論議되고 있는 몇가지 方法은 먼저 水深 200미터 까지를 大陸棚으로 하고 그 以上の 深海는 深海底로 한다는 態度가 있는가 하면 大陸斜面(Continental Slope) 또는 大陸臺(Continental Rise)까지를 國際法上 大陸棚으로 하자는 態度, 大陸臺는 水深이 약 4,000미터나 되는데 여기까지를 大陸棚으로 定하고 그 以上을 國際管理에 두자는 方法도 있다.

그러나 特히 注目할만한 것은 北海大陸棚事件의 判決에서 國際裁判所가 一貫하여 取한 態度는 大陸棚의 基本的인 觀念으로서 大陸棚은 바다로 뻗친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Natural Prolongation of Land Territory)」라 하며 大陸棚이 沿岸國에 屬하는 根據를 大陸棚과 陸地의 地質學的인 一體性에 두려고 하는 理論이다.

이와같이 大陸棚을 바다로 뻗친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이라고 하면 이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의 終端을 그 沿岸國의 大陸棚의 外緣으로 한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그렇다면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의 終端이란 무엇인가? 地質學上 大陸棚과 그것이 끝나는 大陸斜面을 包含한 海底區域을 意味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論理에 立脚한다면 大陸棚協約에 依한 大陸棚의 外緣도 開發可能性에 따라 無制限 擴大될 수는 없다. 그 외에 도 많은 方法이 論議되고 있으나 유엔의 海底平和利用委員會에서도 決定的인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어 그러한 論難은 오히려 先進國의 海岸開發에 對해 「무드」를 깨뜨리고 海岸開發의 遲延시킬 憂慮조차 있다.

如何間 이러한 複雜한 問題를 가지고 1973년에 開催될 第3次 海洋法會議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決定될 것인지 그 歸趨가 자못 注目되는 바이며 바로 그것은 우리의 關心事이기도 하다.

5. 沿岸國의 權利

大陸棚에 對하여 沿岸國은 어떠한 權限을 갖는가? 換言하여 大陸棚의 法的地位는 어떠한가? 大陸棚協約 第2條1項에는 이 權利를 「大陸棚을 探查하고 그 天然資源을 開發하기 爲한 主觀的 權利(Sovereign rights)」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同條 第3項에는 萬一 沿岸國이 大陸棚에서 探查 또는 天然資源의 開發을 行하지 않을 경우에도 他國家는 그 沿岸國의 明示的인 同意없이 는 그러한 活動을 行하거나 當該 大陸棚에 對하여 權利를 主張하지 못한다는 意味에서 排他的이라고 規定하였다. 또한 同條

第3項은 이 權利가 先占 또는 宣言에 依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며 大陸棚에 對한 沿岸國의 權利는 主權的權利(Sovereign rights)라고 하지만 實質的인 權利內容은 大陸棚을 探查하고 그 天然資源을 開發하는 權利와 그러한 權利를 自國에 留保하는 權利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權利行使의 目的을 爲하여서는 이에 關聯한 모든 權利도 包含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領海의 海底에 屬하는 大陸棚이 그 나라의 包括的 主權下에 있는 것과는 分明히 區別되어야 한다.

이에 對하여는 反對하는 學者도 있지만 領海 밖에 大陸棚은 沿岸國의 領土가 아닌 以上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權利行使權을 除外하고는 역시 公海로서 法的地位나 公海上部水域의 上空의 法的地位에 影響을 줄 수 없다(協約3條 參照).

6. 大陸棚 開發과 公海自由保障

沿岸國은 大陸棚의 探查 또는 그 天然資源의 開發을 爲하여 正當한 措置를 取할 權利를 公海自由의 法的地位를 保障하는 見地에서도 大陸棚上의 海底電線 또는 導管의 敷設 및 維持를 妨害할 수 없으며(協約4條) 또한 大陸棚 開發을 爲한 施設이나 開發作業에 依하여 石油, 汚水 等に 依한 海水汚染을 發生시키거나 그 結果 航行, 漁業 및 生物資源의 保存을 妨害 또는 公表를 目的으로 하는 海洋科學調查를 妨害하지 못한다.

施設의 設置에는 施設存在警告를 爲한 恆久的 措置를 取해야 하며 施設의 周圍에는 그 外端의 各點으로부터 500미터에 達한 安全水域을 設定하고 그 施設의 保護에 必要한 措置를 受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設備 또는 裝備 및 周圍의 安全區域은 國際航行에 不可缺한 場所에는 設置할 수 없다(協約5條 參照).

7. 大陸棚의 境界

共有 大陸棚의 境界는 무엇보다도 歷史的인 權利와 地理的 條件 等の 特殊 條件을 勘案하여 當事國間의 合意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合意가 成立되지 않거나 特別한 事情에 依하여 境界線이 決定되지 않는 때에 相互 對向한 沿岸을 가진 兩國의 境遇에는 中間線을 隣接한 國家의 境遇에는 沿岸의 最短거리에 있는 點으로부터 等距離에 있는 線에 依하여 區分된다(協約 6條 參照).

이와 같이 大陸棚 協約은 共有大陸棚의 境界劃定方法으로서 첫째 當事國間의 合意, 둘째는 特別한 事情, 셋째는 中間線이나 等距離線原則을 提示하고 있으나 이것은 分明히 同協約에 署名, 批准한 國家에 對해서만 拘束力을 갖는다. 批准國家라 하더라도 同協約 第12條 第1項의 「모든 國家는 署名 批准 또는 加入時에 第1條에서 第3條까지를 除外한 本協約의 諸條文에 對하여 留保를 할 수 있다」고 하여 拘束力을 排除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同協約의 第1條내지 第3條를 慣習國際法上 成文化한 것으로 보아 非加入國도 이에 拘束을 받지만 其他 條項은 이른바 約定的規則이라 하여 加入國까지도 境遇에 따라서는 留保할 수 있으므로 同協約의 特別한 事情이나 中間線 또는 等距離線原則은 當事國間의 合意의 한 基準이며 非加入에 對하여는 拘束力이 없다. 그것은 1969年 2月 20日 北海大陸棚 事件에서 國際司法裁判所가 等距離의 方法이 모든 當事國에 義務的인 것은 아님을 判定함으로써 더욱 明白해 졌다. 여기에도 反對理論은 있

으나 同協約의 그러한 基準 提示는 적어도 大多數의 當事國間의 合意의 始發點이 될 수 있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各國은 大陸棚에 關한 境界協定을 締結하고 大陸棚開發에 圓滑을 期하고 있는가 하면 當事國間에 協定이 이루어지지 못한 境遇에는 複雜한 境界紛爭問題를 惹起시킬 可能性도 許多하다.

大陸棚境界 劃定에 있어 가장 頻繁하게 惹起되는 特別한 事情의 하나는 섬 問題이다. 그 理由는 大陸棚 協約 第1條에도 섬도 大陸棚을 갖는다고 規定함으로써 그 섬을 基準으로 하여 中間線을 劃定한다면 境遇에 따라서는 不合理한 結果를 招來하여 때때로 紛爭의 要因이 되고 있다.

섬의 存在는 이같이 等距離方式의 適用을 修正하는 “特別한 事情”의 하나이지만 모든 섬이 그 對象이 될 수는 없다고 보며 그렇다고 어느 程度의 것을 基準으로 한다는 明示된 規定이나 慣習도 없는 以上 섬의 크기, 重要度, 數, 本土로부터의 거리 등 섬에 따라 具體的인 것을 境遇에 따라 다르게 判斷할 수 밖에 없으므로 問題는 더욱 困難하다. 따라서 境界線을 긋는 目的을 爲하여서 섬은 그 自體의 價値(merit)에 따라 取扱되어야 하며 領海帶以遠에 있는 極小한 섬이나 모래톱(Sand Cay)같은 것은 測定基準으로서 無視될 것인가 또는 陸地領土의 自然的 延長이 地質學的으로 海灣에 依하여 分斷되어 있을 때, 또는 他國領土인 섬이 그 위에 있을 때에는 어떤 基準을 取할 것인지

는 相當히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다만 北海大陸棚事件 判決에 있어 大陸棚境界 劃定에 基本的 概念으로서 提示한 “陸地 領土의 自然的 延長”과 衡平의 原則은 큰 指針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以上의 諸點을 考慮할 때 大陸棚의 境界劃定은 어떤 原則보다는 當事國間에 合意된 協定에 依하여 解決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이 不可能한 때에는 國際仲裁機關에 依하여 決定지을 수 밖에 없다.

8.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大陸棚에 關한 內容은 國際法에 根據를 두지 않고는 理解하기가 어렵다. 特히 1958年 「제네바」에서 열린 第一次 海洋法會議에서 採擇된 「大陸棚에 關한 協約」이 그 根幹이 될 것이며 慣習國際法이나 그 協約을 中心으로 하여 各國立法措置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大陸棚의 範圍도 未確定的이고 科學技術의 發達로 因하여 協約締結 當時에는 豫期치도 못했던 事態의 發生과 各國의 流動的인 利害問題 때문에 1973年에 開催된 제3차 海洋法會議에서는 大陸棚의 範圍, 領海의 統一等 海洋法 體制에 對한 再檢討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70年代는 國際海洋法의 激動期에 處해 있으며 또한 海洋開發의 先進國과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가 相互利害를 달리하고 있어 問題의 歸決을 注視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 韓國石油產業開發센터 第一 研究室長)

무나 취급할 수 있고, 구조도 간단하고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영사기로서의 많은 장점을 갖이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이것을 토대로 아주 새로운 설계에 의해 기체의 극소화, 기구의 간소화를 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영사기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 관념을 벗어나, 마치 카메라와 같이 휴대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상영할 수도 있는 이점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영사기는 종래의 대형필름 프로젝터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시청각교육, 과학실험등의 기록, 행정이나 상업목적의 브리핑가정의 오락등에 매우 적합하며 앞으로 뒷바침만 있다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많을 뿐더러 국산화가 된다면 종래 같은 목적에 쓰이던 영사기보다 몇배나 염가로 쉽게 공급할 수 있다.

반세기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인 선진제국의 영사기 공업계는 지금도 새로운 것을 위하여 계속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노력해서 뒤떨어진 우리나라 광학공업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 新 案 · 特 許 ◇

미니時代의 미니 製品開發 카-셋트식의 映寫機

金 潤 濟

이 研究는 昨年 12月 科學技術處의 要請에 依해 仁荷工大의 金潤濟教授가 中心이 되어 박종량·천병기·유경중·박민희등 諸氏가 完成한 것이다.

하루 빨리 이 研究試製品이 國產化하고 國際市場으로 進出할 수 있도록 早速한 企業化가 要望된다. (편집부 주)

영사기 공업은 정밀기계공업의 한분야로 우리나라도 상당한 시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전혀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1971년도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본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내용은 많은 영사기중 특히 교육, 과학연구용으로 간단히 이용될 수 있는 카세트식 프로젝터를 택하여 그 설계로부터 시작품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술로서 제작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사기는 우리의 기술로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며, 현재로 그 기계 부품이나 광학적 부품을 막론하고 거의 전부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특히 본연구에서 채택한 카세트식 영사기는 수년전부터 미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것인데, 조작이 매우 간단해서 아